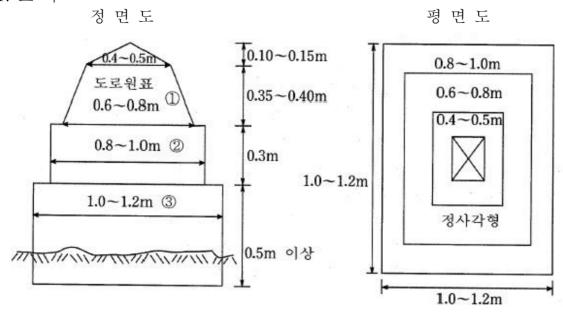
#### ■ 도로법 시행규칙 [별표 2]

# 도로원표의 크기·표기방법 및 설치기준(제23조제2항 관련)

### 1. 크 기



## 2. 표기방법

가 . 표기 방법	나. 비고
1) 정면도 ①의 각 면에는 "도로원표"를	1) 거리는 도로원표 간 거리로서 상급도
표시할 것	로 순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(km)를 합
2) 정면도 ②의 각 면에는 주요 도시명	산하여 표시할 것
및 거리(km)를 표시(예: 인천 42km, 목	2) 섬 지역 등의 경우에는 직선거리(km)
포 429km)할 것	로 표시할 것
3) 정면도 ③의 앞면에는 도로원표를 관리	
하는 도로관리청의 명칭을, 뒷면에는 설	
립일자를 표시할 것	

### 3. 설치기준

- 가. 광역시청과 군청이 같은 행정구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이 1개소만 설치한다. 다만,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나. 도로원표를 본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없어 다른 곳에 옮겨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원표가 본래 설치되어야 할 노면에 직경 50센티미터의 황동판(표면에 "도로원표", "○○시 또는 ○○군"을 표시)을 설치하고, 옮겨 설치한 도로원표 측면(③)에 도로원표가 본래 있어야 할 위치를 방향과 거리로 표시한다.
- 다. 도로원표의 재료는 내구성 있는 석재로 하여야 한다.

라. 도로원표의 글자 표기부분은 음각 또는 동판으로 한다.